

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합의서

본 일반사무 위탁 계약 변경합의서는 2016년 06월 30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일반사무 위탁계약서(이하 '기존 계약서') 내용 중 다음에 기재한 별도의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당사자

1.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위탁자")
2.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수탁자")

다음

제1조 기존 계약서 내용의 효력

"위탁자"과 "수탁자" 사이에 2016년 06월 30일 체결된 기본 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본 일반사무 위탁 계약 변경합의서에서 별도로 변경한 사항에 한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보수

기본계약서 제8조(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일반사무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일반사무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 ②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연간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각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당해 분기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연간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각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당해 분기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구분 | 금액 (부가가치 세별도) | 청구 시기 | 대금 지급 시기 |
|---|---------------------------------|----------------------|--|
| 개발기간 (1차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부터 “갑”이 본건 사업에 의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사 용승인일까지) | 연간 오천만원 (₩50,000, 000) | 사업연도 기준으로 매분기말 | 사업연도 기준으로 매분기말 종료 후 7영업일 이내 |
| 운용기간 (개발기간의 익 일부터 본 계 약종료일까지) | 연간 팔천만원 (₩80,000, 000) | | |

| 구분 | 금액 (부가가치 세별도) | 청구 시기 | 대금 지급 시기 |
|--|---|---------------------------------------|----------------------|
| 개발기간 | 1차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부터 “갑”의 3차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의 전일까지 | 연간 오천만원 (₩50,000, 000) | 사업연도 기준으로 매분기말 |
| | 3차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연간 오천이백만 원 (₩52,000, 000) | |
| 운용기간 (2019년 12월 01일 부터 본 계약종료일 까지) | 연간 팔천일백팔 십만원 (₩81,800, 000) | | |

2018. 10. 15.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회사명 :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이 정 대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3층(상암동, 우리금융상암센터)

회사명 :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박 형 민

